

1%이하로 낮아지게 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세는 지방세의 응익과세의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세목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세목이기도 하다. 이하에서는 2001년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령을 기준으로 면허세의 본질·과세대상·납세의무·세율·부과징수 및 비과세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.

Ⅱ. 면허세의 본질

1. 정 의 (법 제160조)

- “면허”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·허가·인가·등록·지정·검사·검열·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,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함
- 수수료적 성격으로 수익세에 속함

2. 연 혁

- 1950년 국세로 창설
- 1954년 지방세로 이양
- 1973년 신고의 수리나 검열, 심사등 행정행위 추가
 - 1972년까지는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
 - 1973년 법개정으로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의 수리와 검열·심사등에 대해서도 면허세 과세

Ⅲ. 면허세의 과세대상

-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·허가·인가·신고·등록·지정·검열·검사·심사등의